

**<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>**

- ▶ 계약기간 :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+ 3년 2개월으로 적용
  - ※ 예시)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'26.6.30.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'26.6.16. 경우
    - ☞ '26.6.16. + 3년 2개월 => '26.6.16. ~ '29.8.15.
  -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
    - ☞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'26.6.16.이고 '26.6.2.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'26.6.2. + 3년 2개월 가산하여 => '26.6.2. ~ '29.8.1.
- ▶ 피보험자 : 지급대상사업장, 보험계약자 :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
  - ※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: 계약금액(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)의 30% 이상
- ▶ 필요서류 :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(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)
- ▶ 발급기관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
  - ※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
  -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